

의안번호	제 33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3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영웅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17일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3
----------	-----

발의연월일: 2009. 3. 17.

발 의 자: 박영웅·송은섭·박종갑
이영복·권광택·심홍섭
민경환

1. 제안이유

최근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식생활의 서구화 현상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량 감소 및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농업과 농촌 그리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개발·보급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의 이해, 전통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에절의 내용으로 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회의 균등방안 등 교육방향 제시(안 제3조)
- 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정책과 지역실정을 고려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4조)
- 다.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

회 구성내용 및 기능제시(안 제5조)

라. 농업기술원을 식생활교육기관으로 지정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방안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 재원 확보

다. 관련부서 협의 : 농업기술원과 협의됨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인간이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품의 선택, 가공과 조리법,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등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
3. “식생활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식재나 골재 제외)과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6.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하에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3. 전통음식 및 지역별 향토음식 보급

제5조(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2명,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담당과장 1명,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관련 업무담당과장 1명 등이 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의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충청북도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을 식생활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 ① 농업기술원장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교육센터’를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본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원장은 식생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품관련 법인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장이 타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 모두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 한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④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교육센터의 사업내용)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2. 안전농산물 선별요령과 올바른 식생활 지침, 식사예절 등
3.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활동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보전 계승을 위한 체험과 홍보활동
5.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
6. 식생활교육 교재개발, 제작 및 활용 등

제9조(실비보상 등) 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